

회 칙

2005

중 토 산 악 회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

본 회는 중토산악회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 적)

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**학과 발전을 도모하고** 산행활동을 통하여 환경보호 및 건전한 체력과 인격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, 경조사, 기술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 3 조 (자 격)

본 회의 입회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중앙대학교 토목계열 대학 및 대학원 교수
2. 중앙대학교 토목계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
3.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으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

제 4 조 (회 원)

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회원 (회원이라 칭함)

월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며 정기산행을 3개월에 1회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.(특수한 경우는 예외)

2. 준회원

산행 참가시 당일 경비만 부담한다. (경조사 및 회원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.)

제 5 조 (입 회)

회원은 수시로 접수하며 모임에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 회에 제출,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준수사항)

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.
2. 모든 회원은 산악환경보호를 하여야 한다.
3. 산행 중 개인행동을 자제하며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다.

4. 산행시 담뱃불 및 모닥불의 사용에 주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다.
5. 회원간의 이해관계를 두어서는 안된다.
6. 회원끼리의 협조관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7. 학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**

제 3 장 임 원

제 7 조 (구 성)

본 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등반대장, 총무, 기획 등 각 1인으로 구성한다.

제 8 조 (임 기)

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9 조 (자 격)

1. 회장의 자격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
2.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제 10 조 (선 출)

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1. 회 장 : 정회원 3인이상 추천에 의하여 참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다.
2. 부 회 장 :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.
3. 등반대장 :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.
4. 총 무 :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.
5. 기 획 :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.
6. 회장 선출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경선시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.

제 11 조 (직 무)

1.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고 자금 집행 및 행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2. 부 회 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불참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.
3. 등반대장 :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4. 총 무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락업무 및 회비 등 자금관리를 수행한다.
5. 기 획 : 산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, 운영 및 산행일지를 기록 유지 한다.

제 4 장 관 리

제 12 조 (산 행)

본회는 침묵도모 및 회원 유대관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적인 **산행**과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다.

1. 정기총회 : 매년 1회 12월 첫 번째 토요일
2. 정기**산행** : **매월 첫째 토요일로 하며 봄과 가을에는 장거리 산행을 목표로 한다.**
3. 임시모임 : 본 회의 행사, 회원의 경조사 등 필요시 회장의 요청에 의해 통보

제 13 조 (통 보)

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총무는 모든 회원에게 **학교 홈페이지 및 E-mail 또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**

1. 총회 또는 모임의 날짜, 시간, 장소
2. 회원의 경조사
3. 회원의 직장, 직책 및 업무의 이동상황
4. 기타 본 회에 관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

제 14 조 (연 락)

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모든 회원은 총무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연락하여야 한다.

1. 회원의 경조사
2. 회원의 직장, 직책, 업무 이동상황 및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
3. 모임 불참시 불참사유
4. 기타 본 회에 필요한 사항

제 15 조 (행 정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산행일지
2. 금전출납부
3. 회원명부
4. 사업계획서

제 5 장 운 영

제 16 조 (사 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운영 목표로 한다.

1. 회원의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정기산행, 수시산행 등의 행사 개최
2.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운동 및 회원의 유대관계에 필요한 체육대회, 야유회 등의 행사 개최
3. 회원의 경조사 시 알림 및 참여
4. 회원 상호간의 기술교환 및 사회 정보교환

5. 학과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

제 6 장 자 금

제 17 조 (운영자금)

본 회의 운영자금은 년회비, 참가회비, 찬조금, 추가회비로 규정한다.

제 18 조 (년,월회비)

1. 회원은 **년 회비 10만원, 월 참가회비 2만원을**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(단, 가족회원은 회비 면제)
2. 준회원은 회장단에서 결정하는 당일경비를 참가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찬조금)

본 회의는 본 회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.

제 20 조 (추가회비)

본 회의 운영자금 상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의 요청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추가회비의 금액 및 납부시기 등을 결정한다.

제 21 조 (예치 및 관리)

본 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총무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본 회의 자금에 귀속된다.

제 22 조 (회비불반환)

회원이 자격을 상실했거나 탈퇴시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납입회비의 반환 또는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 23 조 (회 계)

본 회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하며 회계연도는 당해 정기총회부터 익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
제 24 조 (회계보고)

총무는 회장의 결재를 득한뒤 매년 정기총회시 당해연도의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지 출

제 25 조 (지출결정)

본 회에 관한 모든 지출은 제 5장의 『운영』에 근거를 두어 회장의 결재를 득한 뒤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6 조 (자료보관)

총무는 지출에 관한 모든 내역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지출보고)

총무는 본 회의 정기총회 회계 보고시 지출보고도 함께 하여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※ 1. 2009. 12. 6 정기총회에서 수정되었습니다.